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

at | Focus

Vol. 10



EU, 미국의 수산물 수입검역 및 통관제도

1. 對 EU, 미국 수산물 수출 현황
2. EU의 수산물 수입검역 및 통관
3. 미국의 수산물 수입검역 및 통관
4. 시사점

2011

10

at 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수출전략처 식품수출정보팀

EU, 미국의 수산물 수입검역 및 통관제도

1. 對 EU, 미국 수산물 수출현황	5
2. EU의 수산물 수입검역 및 통관	9
3. 미국의 수산물 수입검역 및 통관	23
4. 시사점	36

본 자료의 목적과 한계

● [목적] 해당국가 수출확대를 위한 수입통관 기본정보 제공

- 우리나라 수산물수출은 일본 수출비중이 매우 높으며 근거리 운송에 유리한 활수산물 수출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향후 한국산 수산물의 세계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기초정보가 되는 EU와 미국의 수산물 수입통관 현황을 조사함
- 이에 따라 일본 이외의 수출상대국으로 FTA가 발효 중인 EU와 FTA비준단계에 있는 미국의 수산물 검역 통관에 대해 다루었음

● [자료의 한계] 수입국별 사례별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수산물에 대한 각국의 수입통관정보는 자료의 접근이 쉽지 않고, 알려진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다보니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본 자료는 해당국이 수입수산물에 적용하는 일반자격 및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수출에 있어서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의를 요함

1. 對 EU, 미국 수산물 수출현황

가. 한국산 수산물 대 EU수출

□ EU 수출 품목 현황

- 한국은 2010년 EU로 약 1.2억만 달러어치의 수산물을 수출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참치(39%), 기타어류(21%), 오징어(6%), 바지락(5%), 어류 제품(4%) 등임
 - 기타어류는 주로 참치피레트 어류제품은 생선묵(게맛살 등)이 대부분
 - 원양어획물인 참치와 오징어 수출비율이 높음(61%)
 - 양식산 어획물은 바지락, 김, 굴의 수출비중은 약 8%임

〈 대 EU 수산물 수출 〉

(단위: 톤, 천 달러)

품목	2009		2010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총 계	32,940	96,998	48,566	128,359
참치	9,279	29,614	20,549	50,480
기타어류	9,227	30,621	9,625	27,211
오징어	2,148	5,331	2,133	8,274
바지락	888	3,532	1,535	6,621
어류제품	2,123	5,537	2,273	5,114
명태	47	289	4,690	4,799
대구	423	1,293	1,305	4,286
게살	454	3,302	506	3,198
김	461	2,026	487	2,731
그 외	7,891	15,456	5,463	15,644

자료: kati.net

□ EU 수출 상대국 현황

- 한국은 2010년 EU 총 27개국 중 22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였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 주요 상대국임. 특히 대 스페인과 이탈리아 수출금액은 총 수출의 70%를 차지하였음
 - 대 스페인 주요 수출품목은 참치(70%), 바지락(11%)
 - 대 이탈리아 수출품목은 참치(58%), 오징어(21%)

〈 대 EU 국별 수산물 수출 〉

(단위: 톤, 천 달러)

품목	2009		2010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총계	32,940	96,998	48,566	128,359
스페인	17,888	41,437	25,159	55,491
이탈리아	7,553	23,231	12,248	34,331
프랑스	1,942	13,731	2,136	11,054
독일	543	2,469	5,927	10,111
영국	760	5,357	836	7,042
네덜란드	258	2,867	343	4,487
기타국	3,997	7,906	1,917	5,842

자료: kati.net

□ 한국의 대 EU 수산물 수출 특징

- 참치와 오징어 수출 비중이 높고,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주요 상대국임
- 양식수산물은 바지락, 김, 굴 품목이며 비중은 10% 미만임. 바지락은 거의 전량을 스페인으로 수출하고 있음. 2010년 대 스페인 바지락 수출량은 과거 10년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었음. 김제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굴은 다소 주춤한 상태임

나. 한국산 수산물 대 미국 수출

□ 수출 품목 현황

- 2010년 대 미국 수산물 수출금액은 약 1.4억 달러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기타어류 24%, 김 14%, 굴 12%, 오징어 8%, 어류제품 5%, 넙치 4% 등
 - 기타어류는 대부분 참치 피레트, 어류제품은 생선묵, 넙치는 활어로 수출하고 있음
 - 5백만 달러 이상 수출품목 중 양식산 수산물은 김, 굴, 넙치이며 대 미국 수산물 수출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 대 미국 수산물 수출 〉

(단위: 톤, 천 달러)

품목	2009		2010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총 계	28,153	128,885	27,442	142,166
기타어류	2,745	32,902	2,535	33,640
김	4,058	19,336	3,678	23,466
굴	3,223	15,526	3,277	17,432
오징어	6,548	9,020	5,963	11,629
어류제품	2,112	6,648	1,996	6,629
넙치	376	5,098	284	6,004
멸치	1,027	4,438	1,148	5,887
게살	789	5,624	840	4,913
미역	1,078	3,381	1,319	4,257
참치	668	3,903	526	3,423
다시마	397	1,506	651	2,362
소금	1,320	1,580	1,905	2,310
골뱅이	225	1,807	265	2,059
그 외 기타	3,586	18,116	3,055	18,155

자료: kati.net

□ 대 미국 수산물 수출 특징

- 기타어류 즉, 참치 냉동 피레트 수출금액이 제일 크며(약 25%) 양식산 수산물인 김, 굴, 넙치 비중도 약 33%임
 - 양식 수산물(김, 굴, 넙치)이 수출 상위품목으로 지속적인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양식산 수산물은 원양산 어획물과는 달리 향후 생산량 증대에 있어 국제사회 어획 쿼터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수출확대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특히 김은 '11년 9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80% 수출금액이 증가하였음. 일본산에 대한 안전성 우려 및 한국산 김 인지도 상승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이 급증하였음

다. 최근 한국산 수산물 대 EU, 미국 수출 동향('11. 9월말)

□ EU

- 주수출국 스페인, 네덜란드를 제외한 對이탈리아, 프랑스 등 참치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 감소 [73백만불(15.1% ↓)]

□ 미국

- 스시 레스토랑 확산에 따른 김 수요 확대, 굴 주산지 멕시코만 오일유출 사고로 인한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증가 [135백만불 (30.3% ↑)]

2. EU의 수산물 수입검역 및 통관

가. 수입제도 일반 사항

□ EU 무역정책

-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으로 관련 수입제도는 수산물, 수산 가공품 수입에 관한 공통법이 27개국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됨
- 제3국에서 EU로 수입되는 경우 EU는 특별수입규정에 따라 관련서류 (증명서 등)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음

〈 수산물 수입제도 정책 변경 과정 〉



자료: 국가기록원

□ EU 수입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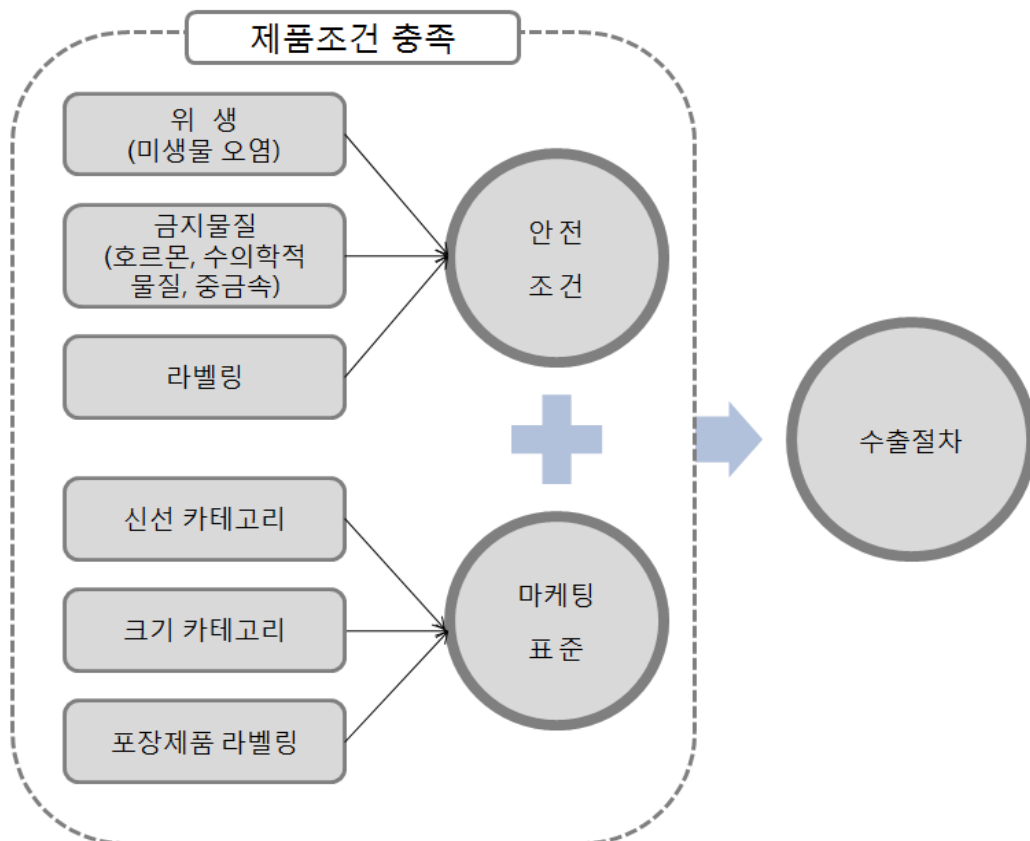
- 모든 EU 역내의 식품수입에 따른 관세는 동일하게 부과 됨
- EU로의 수입관세에 대한 관세율은 EU집행위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함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cgi-bin/tarchap?Lang=EN)

나. 외국 수출자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 안전조건 및 마케팅 표준 준수

- EU로 수입되는 수산물 제품은 반드시 수입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 조건은 크게 안전에 관한 것과 마케팅 표준으로 구분됨
- 안전에 관한 조건은 다시 위생, 금지 물질, 라벨링에 관한 세부 조건으로 나뉘며, 마케팅 표준은 신선, 크기, 포장제품의 라벨링으로 구성됨

〈 유럽연합의 수산물 제품 수입 전제조건 〉



자료: CBI.eu

○ 안전 조건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음

〈 안전 조건 관련 법률 〉

구 분		법 률
위생	미생물 오염	Regulation (EC) 2073/2005
금지물질	호르몬제	Directive 96/22/EC
	스테로이드 및 약물학적 활성물질	Directive 96/23/EEC Regulation (EC) 470/2009 Regulation (EC) 2377/90
	중금속 및 각종 오염물질	Regulation (EC) 1881/2006
	농약	Regulation (EC) 396/2005
라벨링	일반 라벨링 조건	Directive 2000/13/EC

자료: CBI.eu

○ 안전조건 중 EU 위생규정 및 첨가물 조항


- 위생규정 관련 법규
 - Article 8, paragraph 3 of Directive 93/43/EEC
- 첨가물 관련 법규
 - Commission Decision(EC) 2004/432/EC,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882/2004
- 농약사용 관련 법규
 - Regulation(EC) No 396/2005, Commission Regulation(EC) 1881/2006
- EU로 수입되는 상품은 식품위생규정에 의해 HACCP의 기본법에 따라 위생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EU 법상 수출국 내에 식품위생 및 첨가물 관련 검사 기관을 갖추어 수출상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 프로그램(실험실 포함)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음

-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위생 및 동물의 건강상태와는 별도로 식품첨가물, 식품과 접촉된 물질, 식품 방사성 처리여부 등을 추가로 관리함
- 양식 수산물의 경우 국경검사소에서 첨가물 잔류성분 통제(residue control)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마케팅 표준

- 마케팅 표준은 EU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품이 준수해야 할 필수 기준임. 공동마케팅 표준이 설정된 수산물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선도 기준 및 등급, 크기 기준, 포장제품의 라벨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Regulation (EC) 2406/1996은 특정 품종에 대해 마케팅 표준을 설정해 놓고 있어 이 표준에 부합해야 EU에서 판매가 가능함

〈 수산물 라벨링 예 〉

구분	앞면	뒷면
해산물 모듬		
맛살		

- 안전과 마케팅 표준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수산물 수출업체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유럽연합에서 승인한 제3국의 수출제품인가?
 - 유럽연합에서 승인한 수산물 업체 또는 가공선박의 수출 제품인가?
 -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였는가?
 - 유럽연합에서 승인한 국경검역소를 통해 수입되었는가?

💡 EU로부터 허가받은 수산물 수출자란?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이 승인한 국가에서 수출한 등록된 수산물 제품 (Fishery products)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럽연합은 수출국가 뿐 아니라 승인된 수출업체만 수출이 가능함

- 수입조건에 대한 쌍방의 모든 협상은 양측 해당기관에 의해 이루어짐
- 허가 대상은 수산물 생산업체, 가공업체, 포장업체, 보관시설업체 등임
- 수출승인업무는 유럽연합이 아닌 해당국가의 관할청이 승인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해당국가의 관할청에 신청해야함
 - 한국에서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에서 담당(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과정까지 모든 검역과 위생검사를 수행)하며 업체등록은 수시로 신청받아 점검하여 기준에 합당한 경우 등록증을 교부하고 EU에 등록을 요청 하고 있음
 - EU 등록이후 유효기간은 없고 가공시설의 경우 연2회 위생 점검을 통과하여야 등록이 유지됨. 선박은 연1회 위생 점검을 받고 있음

- 활이매패류의 경우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된 것만 EU에 수출할 수 있음('11년 10월 현재 7곳의 지정해역이 있음)
- 2011년 10월 현재 어류제품관련업체 323개 업체가 수산물 수출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EU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http://ec.europa.eu/food/food/biosafety/establishments/third_country/index_en.htm)

< 허가받은 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등록하는 절차 >¹⁾

- 가. 유럽연합에 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3국의 해당관청(유럽연합이 공식 승인한 기관²⁾)은 유럽연합위원회의 소비자 건강보호국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
- 나. 소비자 건강보호국은 요청서에 따라 해당관청으로 질문지를 발송
- 다. 질문지를 받은 해당관청은 질문지의 내용에 따라 유럽연합의 규정과 본 관청에 대한 정보, 위생규정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재함
- 양식 수산물의 경우 인증된 폐기물 감찰 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함
- 라. 서류를 검토한 후 식품 및 수의사 사무관이 현장 조사를 파견 나갈 수 있음. 위험정도가 높은 수산물의 경우 필수 절차임
- 마. 검사결과에 따라 소비자 건강보호국은 해당국가에 적용할 수입품목 및 조건을 결정한 후 집행위원회에 제의
- 바. 검토 절차를 마친 후 EU집행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수입허가를 결정, 통보함
- 사. 승인된 국가의 수출업체 리스트는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모든 수산물 수출국가와 수출회사는 수출품목이 유럽연합의 등록번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각 국별 소관 당국이 갖추어야 할 조건 〉

- 가. 수출국에는 상품의 모든 생산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해당관청이 있어야 함. 이 해당관청은 유럽연합의 수산물 위생기준에 맞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조직과 권한을 갖추어야 함
- 나. 어패류 및 살아있는 어류는 동물위생규정을 준수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위생검사에 전문 수의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필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
- 다. 해당국가의 관청은 공공위생과 건강에 대해 EU가 요구하는 조건 (어획 시스템, 생산 장소, 운송기관 및 보관장소 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함. 이는 생산품의 제품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전염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라. 어패류에 대한 세부 검사 조항들을 만족시켜야 함. 제품은 허가된 장소에서만 생산, 수출할 수 있음. 해당 관청은 이 생산지에 대한 모든 조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마. 양식 수산물은 금속, 전염인자, 살충제 폐기물, 수의약품 등이 갖추어진 검사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 바. 해당 관청은 매년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검사 프로그램을 정비해야 함
- 사. 해당 관청은 정기적으로 검역을 실시하고 인증서를 보증해야 함. 각국 관청의 리스트는 유럽연합의 인터넷 사이트 해당페이지에 게재됨

2) 한국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임

다. 수출서류

□ 수출서류 준비

- 유럽연합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출서류임
-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수출서류로는 인보이스 및 수출제품의 이름과 수출국을 보여주는 서류, 그리고 각종 증명서가 있음
 - 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 Catch Certificate(어획증명서)
 - IUU Certificate(IUU 증명서)
 - CVED (Common Veterinary Entry Document)
- 위의 증명서들을 갖춘 제품만 EU로 수입이 가능함. 또한 한 EU FTA시행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origin certificate) 첨부하여야 함
- 주의사항
 - 이 증명서들은 해당국의 관할청에서 수산물 제품이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수산물 제품의 안전 조건 등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관할청 담당자가 사인하고 도장을 받아 첨부해야 함
 - 유럽연합 내 수산물 수입업체 및 포워딩 전문업체들과의 인터뷰 결과, 불필요한 검역 및 체선료(demurrage)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에 따른 관련 증명서(Certificate)를 미리 준비하고, 통관 전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위 증명서 중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Certificate은 불법어업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EU 규정이기 때문에 수입 통관시 정확한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를 제공할 경우, IUU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음

- IUU 증명서제도가 실시된 2010년 이후 한국 업체들은 어획 증명서(catch certificate)로 이를 대신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란?

- 2007년 7월 1일부터 수산물(fishery)과 이매패류(bivalve molluscs), 극피 동물(echinoderms), 피막동물(tunicates), 바다복족류(marine gastropods) 등 해산물을 EU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1664/2006/EC 에서 정하는 서류와 위생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위생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

〈 위생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s) 〉

- 관련 법규: Council Directive 96/93/EC
- 관련 제품: 동물 또는 동물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animal products), 살아있는 수산제품 및 양식 수산어류, 어란수입시 반드시 본 증명서가 필요
- 증명서는 전문 수의사 또는 전문 검역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증명서 원본은 반드시 수입되는 물건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획 수산물 수입금지 〉

- 가. EU 는 2008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으로 어획한 수산물 및 이를 사용한 그 가공품의 EU로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나. EU 는 허가받은 선박에서 잡힌 수산물 및 동 수산물을 사용한 수산가공품인 경우에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음
- 다. 민물산, 대부분의 양식수산물을 제외한 03류, 1604 및 1605류는 모두 관련 서류(어획증명서, 가공증명서, 운송정보서류)를 발급 받아야 수출이 가능

라. 검역 및 통관

□ 검역 사항

○ 검역 지침 마련

- EC 집행위원회는 1989년 동물검역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였음
- 1990년 이 지침을 수산물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제3국에서 EU 역내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최소한 이지침의 기준을 준수 하도록 하고 있음
- 1992년에는 지침 이전부터 가동 중인 가공공장에도 이 지침이 적용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음

○ 국경 검역

- EU 집행위는 회원국 국경의 세관에서 살아있는 동물, 동물가공 식품 및 냉동식품에 대해 수입검역을 수행하는 지정된 검역소 (국경검역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역소 검사

- 수산물 제품은 승인된 검역소를 통해 반드시 수의학적 검사를 받고 수입 후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음
- 검역소에서는 서류검사, 제품검사, 물리적 검사를 실시함
 - 서류검사 및 제품검사
 - 모든 수산물은 100% 반드시 서류체크, 제품체크를 거침. 제출 서류로는 인보이스, 수출제품의 명세, 수출국의 서류 및 각종 증명서 등
 - 수출업체는 반드시 이 서류가 모두 첨부되어 있는지, 서류는 수입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담겨있는지 확인해야 함
 - 이때, 반드시 유럽연합의 CVED양식³⁾을 사용해야 함
 - 물리적 검사는 무작위로 실시(포장상태, 컨테이너 온도, 실험 실테스트 등)
 - 3가지 검사 통과후 검역소는 CVED에 사인과 도장을 찍어 수입업체에 줌

〈 한국산 수산물 검역 문제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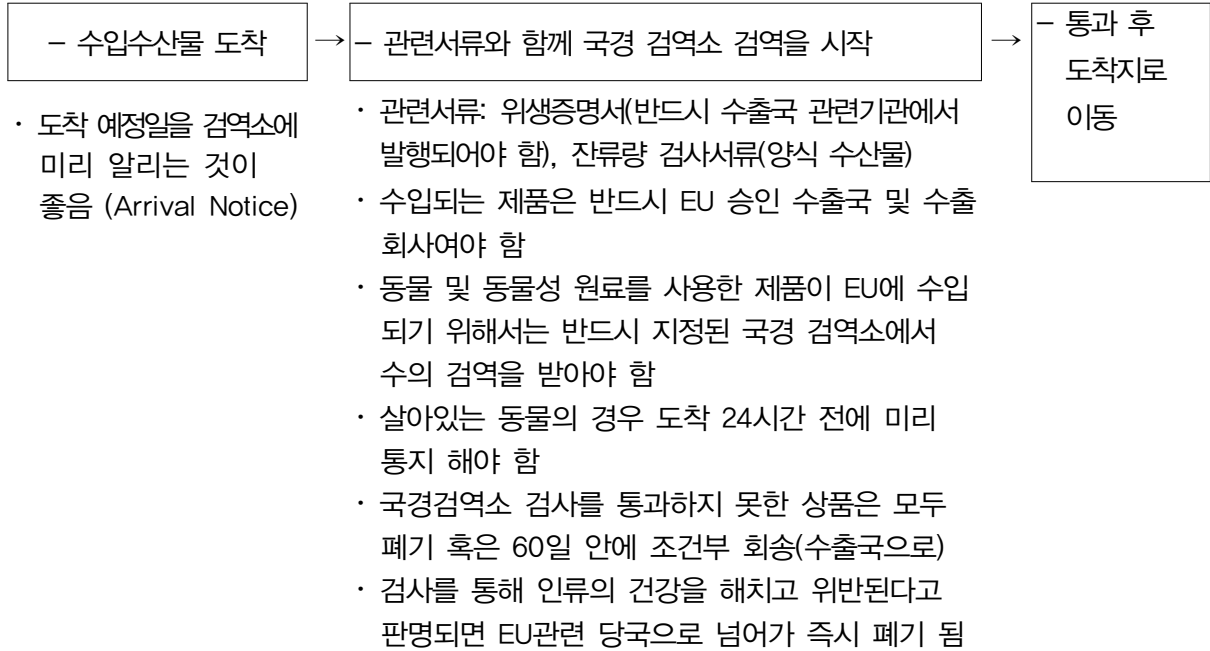
원산지	검역 기간	검역 대상
한국	2006/11/08 ~ 2008/05/23	Cadium (카드뮴)
한국	2005/07/06 ~ 2008/06/16	Cadium (카드뮴)
한국	2010/06/02 ~ 2010/07/06	Mercure (수은)
한국	2011/01/05 ~ 현재	Infestation parasitaire (anisakis) (아니사키스) ⁴⁾

*제품명은 수산물로 분류되었으며 회사명은 표기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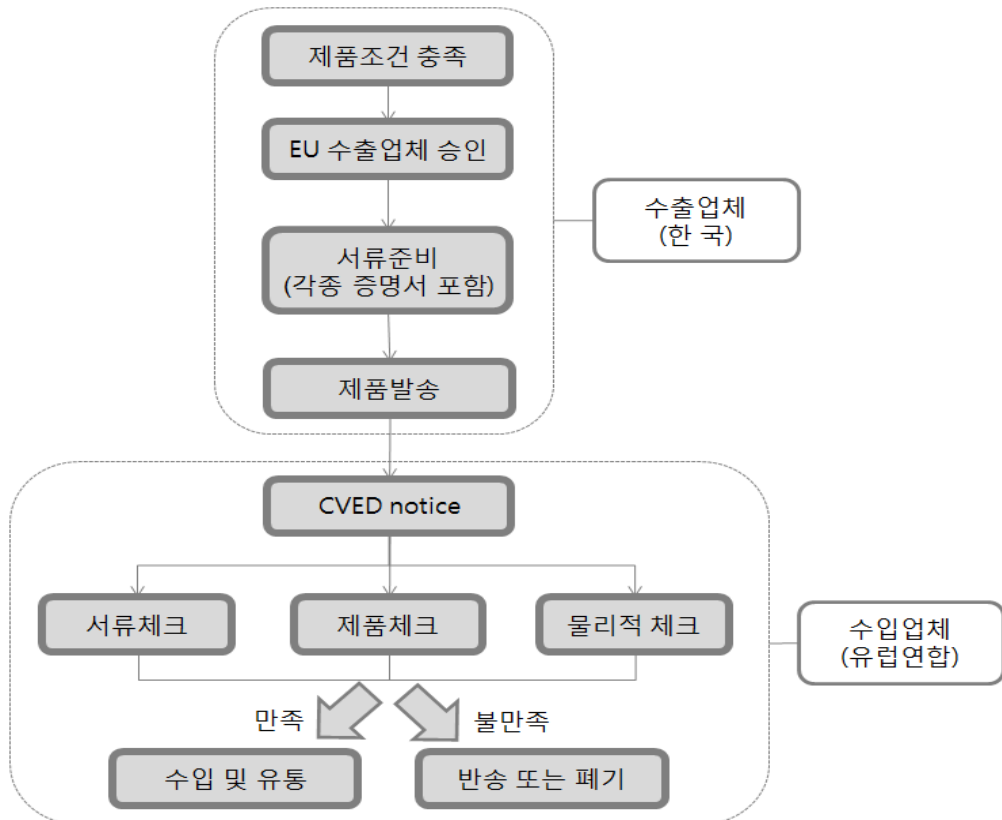
3) CVED양식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NSLEG:2004R0136:20090501:EN:PDF>)

4) 바닷물고기에 기생하는 선충

〈국경검역소(Border Inspection Post; BIP) 주의사항〉



〈 유럽연합 수산물 수입과정 〉



□ 한국과 EU 검역규정 협의 사항

- 검사품목은 활이매패, 극피류,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
- 전염병검사(어류 11종, 패류 5종, 갑각류 9종)
-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생산, 가공시설로 등록된 공장(선박포함)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함. 수산제품의 포장에 국가명, 생산, 가공시설의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라벨링 및 의무표시사항

- 원산지 표시는 국제규정에 입각해 성분 원산지와 완제품 가공지가 다를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하며 수출국 언어와 영어로 표기를 해야 함
- 기본 표기 내용
 - 순중량, 상품명, 유효기한 및 저장조건, 성분표(색소, 알레르기 성분⁵⁾, 방부제 및 첨가물내역), 제조기계번호, 제조자(수출업자 혹은 포장업자의 이름 및 주소), 제조일자, 제조국
 - 사용방법, 알코올함량, 영양성분 표시, 최소 글자 크기는 3mm

□ 통관 시 주의사항

- 위생증명서 및 서류관련
 - 위생증명서 상 제품의 정보와 실제 제품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위생증명서에 찍힌(수출국 기관에서 발행 된) 도장의 모양이 잘 보이도록 찍혀야 함. 서류에 HS코드 및 품목 코드가 불일치 한 경우 수입자에게 벌금 부과

□ 현재 수출이 되지 않는 품목

- 현재 한국산 활어(양식 포함)의 대 EU 수출은 수출국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아 수출이 되지 않고 있음⁶⁾
 - 대 EU로 활어 수출이 가능한 국가 리스트는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51/2008' 부록3(Annex III)에 명시되어 있음

5) 생선(모든 종류의 생선과 제품), 갑각류(lobster, crab, prawns, langoustin)

6)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19/2009, Annex III(수출가능한 제3국 리스트)에 한국은 수록되어 있지 않음.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51/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19/2009

〈대 EU 활 수산물 (양식 포함) 수출 가능 제 3국가 리스트〉

국가	수출 가능 수산물			기타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Australia (호주)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Brazil (브라질)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Canada (캐나다)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Chile (칠레)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China (중국)	○			
Colombia (콜롬비아)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Congo (콩고)	○			
Cook islands (쿡아일랜드)	○	○	○	
Croatia (크로아티아)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Hong Kong (홍콩)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India (인도)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Indonesia (인도네시아)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Israel (이스라엘)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Jamaica (자메이카)	○			
Japan (일본)	○			
Kiribati (키리바시)	○	○	○	
Sri Lanka (스리랑카)	○			
Marshall Islands (마셜)	○	○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			
Malaysia (말레이시아)	○			
Nauru (나우루공화국)	○	○	○	
Niue (니우에 섬)	○	○	○	
New Zealand (뉴질랜드)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French Polynesia (프랑스 령 폴리네시아)	○	○	○	
Papua New Guinea (파푸아 뉴기니)	○	○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Pitcairn Islands (핏케언 제도)	○	○	○	
Palau (팔라우)	○	○	○	
Russia (러시아)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Solomon Islands (솔로몬 제도)	○	○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Singapore (싱가폴)	○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Taiwan (타이완)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Thailand (태국)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Turkey (터키)	○			모든 종류의 어류 수입 가능
Tokelau (토켈라우 제도)	○	○	○	
Tonga (통가)	○	○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Tuvalu (투발루)	○	○	○	
United States (미국)	○		○	
Vietnam (베트남)	○			
Wallis and Futuna (월리스 푸투나 제도)	○	○	○	수입 가능한 어류 한정되어 있음
Samoa (사모아)	○	○	○	

3. 미국의 수산물 수입검역 및 통관

가. 수입제도 일반사항

□ 미국의 식품수입 관련 법규

○ 식품수입과 관련한 법규

- 미연방식품의약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s amended)
- 공정포장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수입우유법/치환유법(Import Milk Act/Filled Milk Act)
- 연방 부식성 독 법(Federal Caustic Poison Act)
- 보건 및 안전을 위한 방사능 통제 법(Radiation Control for Health and Safety Act)
- 21항 CFR, 특히 파트 1, 하부파트 E수입과 수출(Title 21 CFR, especially Part 1, Subpart E-Import and Exports)

○ 수산식품 수입과 관련한 안전 프로그램

- HACCP 주요사항
 - 외국 가공 공장 검사
 - 미국내 수입수산물 샘플링 검사
 - 수입산에 대한 국내 감시 샘플링
 - 수산물 수입자 검사
 - 수산물 생산자 등록 평가
 - 수출국 평가 프로그램과 외국 파트너와 FDA 해외지소 관련정보 활용

- 수출국에 대한 검사와 해외망
- 위험기반 평가시스템으로 샘플링을 시행(PREDICT)
- 외국 평가 프로그램시행(Foreign Country Assessments)
-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⁷⁾
- 종합식품안전시스템(Integrated Food Safety System)
- 유해물질 잔유량 모니터링 프로그램(National Residue Monitoring Program)
- 소비자정보(Consumer Information)
 - FDA, USDA 식품안전 주의보(food safety alert), 리콜 등 최근 정보를 이메일, 휴대폰문자, SNS망 등으로 신속 제공

□ 수산물 수입 쿼터

- 대부분의 수산물은 수입쿼터가 없음. 멸치 쿼터제는 '05년 없어졌으며 참치는 관세율쿼터가 있음
 - 참치(1604.14.22) : 2011년 19,055톤까지 관세율 6%, 초과분 12.5%적용
 - 즉, HS code 1604.14.22 Tunas and skipjack(참치 및 가다랑어) in airtight containers not in oil(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름에 담그지 않은 것), 용기내용물 중량이 7kg 이하인 것으로 전년도 미국소비량의 4.8%가 올해 쿼터량이 됨

7) 2011년 1월 발효된 법으로 해외의 수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은, 수출국의 식품안전프로그램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공중건강을 보호를 증명할 수 있는 동등위생기준이라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임. 외국의 수출자에게 적용되는 '외국의 식품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관련하여서는 향후 1년 내에 세부사항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임(수입운송 서류검사, 식품회사 내부안전관련 기록조사, 위험성분분석, 연간 식품가공 시설검사, 수입품목샘플검사 등이 포함될 것임). 단, 수산물 HACCP인증시설은 예외임

나. 외국 수출자를 위한 법규 및 준수사항

□ 식품시설 등록

○ 수출업체의 식품시설 등록 (Registration of Food Facility) ⁸⁾

- 2003년 12월부터 시행된 바이오 테러리즘 법에 의거 수출업체는 FDA에 식품시설 등록이 필요함. 수출업체가 식품 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후 11자릿수 시설등록 번호가 발생하며 미국의 수입업체는 식품 수입시 사전 신고를 할 때 이 번호를 입력해야 함
- 즉, 반드시 외국의 수출업체는 FDA에 시설등록번호가 있어야 함
- 등록시 미국 내 대리인(agent) 정보를 기입해야하며, 미등록시에는 수입식품의 사전 통보를 할 수 없게 되고 통관이 불가능하게 됨. FDA에서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와 함께 Pin Number를 알려주며 수입 통관시 꼭 필요한 번호임
- www.fda.gov 에 접속하여 “registration of food facility” 검색 및 등록

○ 저산성식품(Low-Acid Canned Food)과 산성식품(Acidified Food) 수출

- 제조시설(공장)등록 FCE #(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을 해야하며 수출업체는 미국 FDA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장에서 제조되는 모든 제품 리스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시설을 등록함
- 저산성식품
 - : 열가공후 밀봉용기에 무균상태로 포장된 pH가 4.6이상 수분활성도 0.85이상인 식품

8)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이 법률 ‘공공보건과 바이오테러 대응법’을 제정하였음. 2003년 12월부터 시행된 바이오테러대응법은 5개의 항(Title)으로 나뉘어 있으며, 제3항(TitleIII)의 A 부항(subtitle)과 관련하여 4개의 세부규칙이 있음: 305조(식품업체 등록), 307조(수입 식품 선적의 사전통보), 303조(행정적 역류조치), 306조(식품기록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것임

- 산성식품

- : 수분활성도가 0.85 이상인 저산성식품에 산을 첨가해 pH를 4.6이하로 조절한 식품

- 공정등록(SID: submission identifier): 약 3주후 공장번호(FCE #) 나오면 제조공정을 제출하고 SID를 발급받음

- 자연적인 산성식품, 수분활성도가 0.85 미만인 식품은 SID가 면제되기도 함

- FDA가 자국의 수산물 수입자에게 요구하는 사항(2가지 중 하나 충족)

- ① 수산물 수출국의 위생규정이 미국과 동등한 위생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수출업체이어야 함

- FDA는 몇몇 국가와 MOU를 체결하여 HACCP를 대신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패류에 대한 MOU를 미국 FDA와 교환하고 있어, 패류는 MOU 규정을 잘 준수하면 따로 HACCP 규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됨

- 미국은 수산물의 경우 아직까지 포괄적으로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없으며 캐나다, 일본 등 몇 개 국가와 협상 진행 중

- ② 해외의 수산물 수출업체가 미국의 HACCP요구조건에 일치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수산물 업체의 HACCP의무는 미국내 업체에도, 수출업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활어의 경우 잉어의 봄바이러스혈증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 8종⁹⁾의 어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활, 신선, 냉동, 가공어류는 특별한 수입 허가나 수입요구 조건 없이 수입됨

9) Koi 잉어Cyprinus carpio, 금붕어Carassius auratus, 초어Ctenopharyngodon idellus, silver잉어Hypophthalmichthys molitrix, 큰머리 잉어Aristichthys nobilis, 유럽붕어Carassius carassius, 유럽 잉어Tinca tinca, 유럽 메기 Silurus glanis

□ 미 식품의약청(FDA)과 수산물 HACCP

- FDA는 자국산 및 수입산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단계의 위생을 위해 1991년 수산물프로그램(Office of Seafood Programs 1991)을 신설하고 해양수산청(NMFS)과 함께 식품 안전프로그램인 HACCP을 제정함
-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FDA의 위생규정준수에 대한 의무를 같이 함
 - HACCP은 미국내 수산물 수입업체와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 가공업체, 포장업체, 창고업체들에게 동시에 적용됨. FDA규정에 따라 미국의 수입업체에게는 해외의 공급업체들이 수산물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HACCP을 통과하였음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음
 - 우선, 미국내 수입업체는 수입서류 작성시 수출업체 FDA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해야하며
 - FDA는 수산물 수입업체의 HACCP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감사할 때 외국의 수출업체의 HACCP증명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이때 한국의 수출업체는 미국내 수입업체로부터 HACCP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음

〈FDA의 미국 수입업체 감사 확인사항〉

-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출업체의 HACCP 및 위생관리기록
- 수출국 및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HACCP인증
- 수출업체의 HACCP플랜 및 수입품목에 대한 HACCP인증서
- 기타 증빙서
- 수입업체가 HACCP 정기제품 및 서류감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증빙서류 인정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며 이후 3번의 수입통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으면 FDA감사를 분기별 실시로 변경

☞ HACCP은 수산물 수입 통관시 제출해야 할 의무서류인가?

- 의무서류는 아니지만, 모든 수입수산물 역시 미국내 수산물과 같이 HACCP규정에 따라 생산, 가공되어야함을 증명해야 하는 수입 업체는 FDA의 통관검역에서 요청받을 경우 또는 미국 FDA 정기 감사시 이를 증명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다. 검역 및 통관

위생규정

○ 자국산 수입산 수산물 위생규정

- 미국 자국산 및 수입산 수산물에 적용되는 위생규정인 어류와 수산 제품 위해와 통제사항 안내(Fish and Fishery Products Hazards and Controls Guidance, 총476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음

* 참조 웹사이트

<http://www.fda.gov/Food/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Documents/Seafood/FishandFisheriesProductsHazardsandControlsGuide/default.htm>

대표적인 통관 거부내용과 제재

- 수산제품의 경우 일반식품에 비해 통관검역시 훨씬 엄격한 위생 기준이 적용됨
- 불량/비위생, 미생물/세균(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화학물질(독소, 히스타민) 등

○ 통관거절시 제재

- FDA는 검사결과 통관거절이 결정되면 90일 이내 폐기 처분 혹은 FDA감독하에 회송(back ship) 조치. 수입업체는 이의제기나 재검사 요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 수산물이 FDA로부터 '불량품', '상품표기위반'으로 거부된 경우 수입자와 제조업체 등을 '검사없이 억류가능한(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업체 리스트(Red list)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음
 - 이 명단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미국 수입물품에 최소 5회 이상 FDA로부터 검사받고 통과하고 FDA에 삭제요청 청원서를 제출

○ 수산물 통관시 샘플테스트 실시 확률이 높은 제품

- 훈제/신선/냉장어류, 수산물 수프 및 샐러드 제품
- 신선/냉동 비가공 패류
- 즉석조리용(가열처리) 수산식품
- 히스타민 생성어종(멸치, 참치, 방어 등)
- 양식 수산물
- 즉석조리용(비가열) 수산식품 - 캐비어, 성게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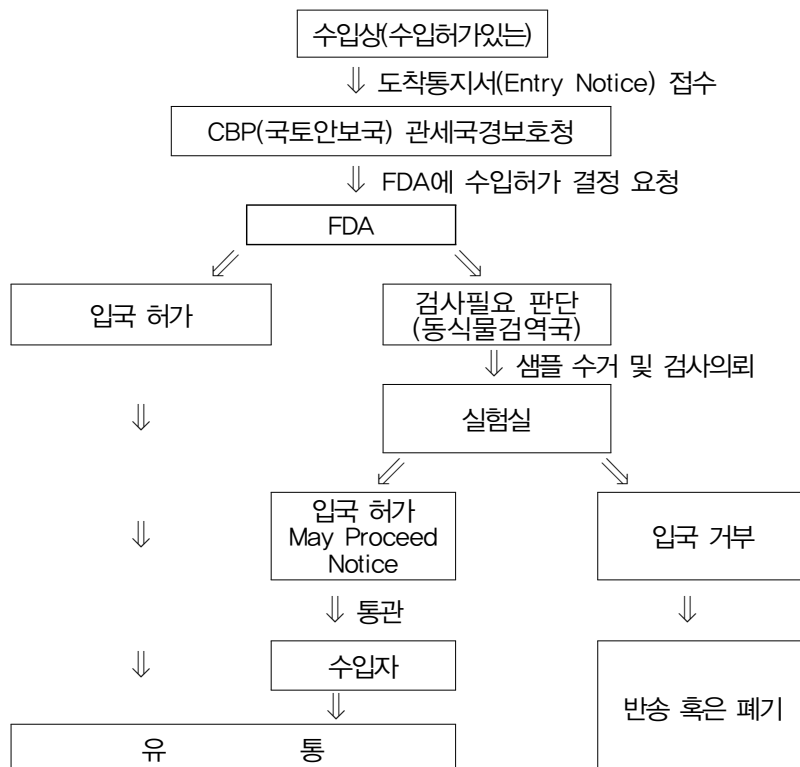
□ 수산물 수입절차

- 미국으로 수입되는 농림수산물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 수입됨
 - 수입자는 도착통지서(Entry Notice)를 운송사에서 받아 관세청 접수
 - 관세청은 FDA에 농림수산물의 입국을 알리고 입국허가 결정 요청
 - FDA가 물품 검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입국 허가됨
 - 수입되는 수산물이 금지품목이 아니거나 질병의 의심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FDA는 어류 샘플을

검사하지 않고 수속 진행 동의서(“May Proceed Notice”)를 세관과 수입업체에게 송부하여 수입물품의 반입이 가능하게 됨

-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면 FDA는 샘플조사를 수행. FDA직원이 샘플을 수거해 FDA 실험실로 조사를 의뢰함
-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외형, 포장, 라벨링, 서류문제 혹은 수입주의보 목록(Import Alert List)에 해당되는 경우임
 - 수입업체에게 “보류 및 청문회 통지서(Notice of Detention and Hearing)”을 통보함(1~5일 소요)
 - 수입업체는 10일 이내에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 실험실검사(Lab test) 실시 후 판정(1~2주 소요)
 - 이 모든 절차는 길게는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샘플조사 결과 FDA 실험실에서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즉시 입국허가, 불합격 판정이 나면 입국이 거부됨
- 불합격 판정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이의 제기할 권리가 있음

〈 수산물 수입 절차 〉



□ 한국의 수출용 패류 관리

- 미국은 살아있거나(Live), 가공되지 않은(Raw) 냉동 혹은 비냉동제품, 연체패류(molluscan shellfish)¹⁰)를 취급하는 업체는 NSSP (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국가패류위생조항)의 규정에 따라 FDA에 등록된 업체에 한하고 있음
- 단, 열가공처리 되었거나 밀봉처리, 조리된 제품은 제외됨
- 패류 수출국은 미국패류위생규정의 동등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FDA에서 승인한 국가에 한함
- 미국은 수출용 패류 생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패류위생협정 MOU를 맺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법으로 수출용 패류 해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또한 가공업체도 FDA에서 인증한 등록업체여야 하며 매년 갱신이 필요함
 - 2011년 3월 8개 해역이 지정되어 있음, (한개는 잠정해역) 행정규칙(“지정해역의 지정“)에 명시되어 있음
- ICSSL(패류 선적자 명부, 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¹¹) Shippers List)에 등록된 업체에서 작업한 제품만 수출 가능함. 매년 4회 점검하며 ICSSL 등록은 매년 갱신해야함. 2011년 10월 현재 한국은 5개 업체가 가공자(shucker-packer(SP))로 등록되어 있음
 - 승인된 수출용 패류 선적자 리스트는 FDA웹페이지에서 확인가능¹²)
 - 승인된 패류선적자 업체등록은 매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매해 한국 관할 당국(농식품부)은 신청을 받아 기준에 부합되면, FDA에 등록을 갱신 요청하고 있음

10) 조개류(clams), 홍합(mussels), 굴(oysters), 대합(quahogs), 꼬끼리조개/미루가이(geoducks), 고둥(whelks), 권패류(limpets), 가리비(whole scallops&scallops with roe)

11) 신선 및 냉동 굴(Fresh and Frozen Oysters), 조개(Clams), 홍합(Mussels), 통 혹은 알이있는 가리비(whole or roe on scallop), NSSP가 규정하는 연체패류는 쌍각류(bivalves)에 한함

12) <http://www.fda.gov/Food/FoodSafety/Product-SpecificInformation/Seafood/FederalStatePrograms/InterstateShellfishShippersList/default.htm#intro>

- 농식품부 소속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지역 관할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며, 한국의 수산물 HACCP과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등록증을 교부하고, FDA로 등록함

□ 라벨링

○ 수산가공제품의 라벨링

- 가공 포장된 수산식품은 식품표시(food labeling)와 영양표시(nutrition facts)가 의무사항임
- 가공되지 않은 어류원물은 영양표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로 소비되는 20개의 비가공 수산물¹³⁾에 대해서는 미국의 소매점에서 영양표시를 하여야 함(강력권고사항)

○ 라벨링 표시법

- 식품표시사항(Label statements)은 주표시면(principle display pannel ;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이나 정보표시(Information pannel ; 주 표시면의 바로 오른쪽)에 기재함
- 주표시면에는 식품명과 실중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정보표시면에는 주표시면에 기재되지 않은 아래사항을 표시함
 -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원재료명, 영양 표시 등
-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제조, 포장,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
 - 거리주소 (회사이름과 주소가 전화번호부 미기재시)
 - 도시명, 주명(수입식품일 경우 국가명), 우편번호

13) 20개 주요 소비 품목 : Blue crab, catfish, clams, cod, flounder/sole, haddock, halibut, lobster, ocean perch, orange roughy, oysters, pollock, rainbow trout, rockfish, salmon (Atlantic/coho/Chinook/sockeye, chum/pink), scallops, shrimp, swordfish, tilapia, and tuna

○ 알레르기에 대한 표시사항(재료명)

- '04년 제정된 식품알레르기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등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Contains Fish, Crustacean, shellfish 등)

○ 원산지 표기

- 미국정부는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원산지 표시의무는 미국 관세청 (U.S. Customs)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써 FDA에서 관장하고 있는 라벨링 (Labeling) 규정과는 별도의 것임. 따라서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미국 무역 세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 이 규정에서 말하는 원산지란 수입되는 물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개조 되는 국가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최종 소비자 (Ultimate purchaser)가 구입할 때 그 상태의 물품을 의미함
-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반드시 표준영어로 국가를 표기. 따라서 한국 상품일 경우, 반드시 Korea를 사용하여야 함(Made in Korea, Product of Korea)
 - 표시방법은 3가지 원칙 적용
 - ① 눈에 잘 띄이는 곳에, ② 읽기 쉽게, ③ 지워지거나 분실되지 않게 (아주 작은 활자로 포장지 구석에 표시할 경우 원산지규정 위반임)

라. 수산물 통관시 주의사항

○ 활넙치

- 미국은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IPHC (International Pacific Halibut commission)의 체장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22인치(약 55cm)

미만의 경우 유통이 금지되므로, 한국산은 이 규정의 예외를 위해 양식산임을 증명 하는 원산지 증명서 및 태그(tag)필요

- 통관시 서류검사, 샘플링 검사로 판정되는 경우 FDA는 HACCP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제출이 필요함
- 항공운송이 대부분으로 통관시 필요한 서류, 원산지, 생산자 정보, 날짜 등 정확한 자료 제공시 통관에 큰 어려움은 없는 편임. 단, 활넛치 항공 운송 및 통관에 2~3일이 소요되는 경우 폐사율이 높아지므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함

○ 건조 멸치

- 국물용, 볶음용 건조멸치가 수입되고 있으며 통관시 타 품목에 비해 위생검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최근 FDA의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안전검역이 강화되면서 통관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내장이 포함된 건멸치에 대한 통관보류 사례가 발생
 - 통관이 거부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없이억류가능한(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리스트에 등재하고 있음
 - 최근('11.10.13) FDA발령 경보에 따르면 일본, 베트남, 한국 등의 관련 제품과 관련업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냉동, 통조림 굴

- 수출용패류 지정해역 이외 생산지의 굴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미국에 수출되는 굴은 승인된 공장에서 가공된 굴만 수출가능. 냉동굴 포장박스에 FDA승인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샘플링 검사에 포함된 경우 FDA 요구시 HACCP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통조림의 경우 제조시설등록, 공정과정 등록은 제품별로 등록 번호를 모두 받아야함.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통관이 안 됨

- 해동된 상태의 굴 중량이 라벨링 상의 중량과 맞지 않는 경우 판매금지, 회수조치 사례 발생 가능함
- 미국내 수입자가 FDA에서 승인되지 않은 제조자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회송조치를 당하게 됨
- 중국의 경우, 패류 지정해역이 수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날 (raw)제품은 미국 수출이 불가하여 조리된(cooked) 제품만을 수출하고 있음. 미국은 매년 2회 패류를 수입하는 각 도매상을 대상으로 위생부서(Health dept.)에서 별도 조사(inspection)를 실시하고 있음

○ 전복

- 전복의 경우 미국 수출량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 건조전복이 수출되기 시작함
- 가공된 패류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는 일반 가공 및 냉장, 냉동 식품류와 절차가 동일하며, 간혹 FDA요청에 따라 샘플 검사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제품 포장상의 표기방식에 대해 점검을 하기도 함. 생(raw)인지, 조리된 것(cooked)으로 표기 되었는지를 확인 함
- * 전복은 지정해역 패류(이매패류)와 상관없는 원시복족목 연체류임

○ 붉은 대게살

- 갑각류 가공품의 수입통관은 일반 가공 및 냉장, 냉동식품류와 동일하며, 필요시 FDA가 샘플테스트를 할 수 있음. FDA요구시 HACCP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산발 LA 통관시 운송기간은 2주가량 소요되나 통관시 샘플링 검사 필요시 추가 4주가 더 소요됨

○ 조미 김

- 기본적인 수입정보와 라벨링이 바르게 표기된 경우 어려움 없이 통관 되고 있음

4. 시사점

가. EU에 활어를 수출하기 위한 과제

- EU는 활어 수입에 있어 승인국가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승인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협상이 우선되어야 함

나. 상대국 위생제도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EU와 미국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입수산물에 대해 합법적인 어획, 어획수산물의 크기 등에 대해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음
 - EU의 IUU관련 서류, 미국의 양식산 증명(체장 22인치 미만 어류) 등
- 대 미국 수출시 수산물 HACCP 인증은 필수
 - 미국 FDA는 미국내 위생제도를 강화하면서 수입수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수산물 수입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로 수입자는 HACCP 인증받은 한국의 수출업체를 선호하게 될 것임. 향후 미국에 수출을 계획하는 업체는 수산물 HACCP인증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상대국의 식품안전 관련사항이 변화되는 경우 수입품에 대한 통관이 변화되므로 이에 대한 숙지 및 신속한 대처 필요
 - 요구서류 미비, 통관보류사례에 대해 숙지하고 동일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는 수입국에서의 통관지연 혹은 회송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
 - 미국의 경우 올해 초 개정된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FDA 통관이 강화되었음. 또한 향후 외국의 식품공급자인증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필요

[참고자료] 유럽연합 CVED 양식

○ 링크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NSLEG:2004R0136:20090501:EN:PDF>

EUROPEAN COMMUNITY		The Common Veterinary Entry Document, CVED	
Part 1: Details of consignment presented	1. Consignor - Exporter <input type="checkbox"/>	2. CVED reference number	
	3. Consignee	Border Inspection Post	
		AD-AMU Unit Number	
	4. Importer	4. Person responsible for load	
		5. Country of origin (UN/Code)	7. Country from where consigned (EU code)
	6. Arrival at BIP (estimated date)	8. Delivery address	
	11. Vessel name / Flight No. Bill of Lading No. / Airway Bill No. Waybill / Validek / Trailer No.	18. Veterinary document(s) Number(s)	
	12. Nature of goods, Number and type of packages	19. Date of issue	
		Establishment of origin (where relevant)	
		Veterinary approval number	
	13. Commodity Code (13, minimum first 4 digits)	14. Gross weight (kg)	
		15. Net weight (kg)	
Temperature	Chilled: <input type="checkbox"/>	Frozen: <input type="checkbox"/>	Ambient: <input type="checkbox"/>
16. Seal number and Container number			
17. Transported to	<input type="checkbox"/>	18. Fee found in 3rd Country	<input type="checkbox"/>
EU BIP	AD-AMU unit no.:	The 3rd Country	- EU code
3rd country	3rd Country (EU code):	EU BIP	AD-AMU unit no.:
19. Conforms to EU requirements		20. Fee request	
Confirm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oes NOT conform	<input type="checkbox"/>		
21. For internal market		22. For WCO's (confirming consignments)	
Human consumption	<input type="checkbox"/>	Customs warehouse	<input type="checkbox"/> Registered No.
Animal feedingstuff	<input type="checkbox"/>	Free zone or Free warehouse	<input type="checkbox"/> Registered No.
Pharmaceutical use	<input type="checkbox"/>	Ship supplier	<input type="checkbox"/> Registered No.
Technical use	<input type="checkbox"/>	Ship	<input type="checkbox"/> None
Othe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ort
23. Declaration		Place and date of declaration	
I, the undersigned person responsible for the load detailed above, certify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statements made in section I of this document are true and complete and I agree to comply with the legal requirements of directive 87/78 EC, including payment for veterinary checks, for re-examination if any consignment rejected after transit across the ECU to a third country (Article 11.3 a), or needs of destruction if necessary.		Name of signatory	
		Signature	

EUROPEAN COMMUNITY

The Common Veterinary Entry Document, CVED

Part 2: decision on consignment	24. Previous CVED: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Reference number:	25. CVED Reference Number:
	26. Documentary Check: Satisfactory <input type="checkbox"/> Not satisfactory <input type="checkbox"/>	27. Identity Check: Seal check <input type="checkbox"/> OR Seal identity check <input type="checkbox"/> Satisfactory <input type="checkbox"/> Not satisfactory <input type="checkbox"/>
	28. Physical Check: Satisfactory <input type="checkbox"/> Not satisfactory <input type="checkbox"/> Not done 1. Reduced checks regime <input type="checkbox"/> 2. Other <input type="checkbox"/>	29. Laboratory Tests: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Tested for: Random <input type="checkbox"/> Samples <input type="checkbox"/> Results: Satisfactory <input type="checkbox"/> Not satisfactory <input type="checkbox"/> Forward pending a result <input type="checkbox"/>
	30. ACCEPTABLE for Transport: EC ERP <input type="checkbox"/> ANIMO unit no.: 3rd country <input type="checkbox"/> 3rd Country ISO code:	31. ACCEPTABLE for Transit Procedures To 3rd Country - DED code For ERP: ANIMO unit no.:
	32. ACCEPTABLE for Internal Market For Free Circulation Direct consumption <input type="checkbox"/> Animal feeding stuff <input type="checkbox"/> Pharmaceutical use <input type="checkbox"/> Veterinary use <input type="checkbox"/> Other: <input type="checkbox"/>	33. ACCEPTABLE if classified Article 9 procedure <input type="checkbox"/> Re-import of EC products (Article 12) <input type="checkbox"/>
	34. NOT ACCEPTABLE: 1. Re-export <input type="checkbox"/> 2. Destination <input type="checkbox"/> 3. Transformation <input type="checkbox"/> By Date: <input type="checkbox"/>	34. ACCEPTABLE for Specific Warehouse Procedures (Articles 12.4 and 13) Customs warehouse <input type="checkbox"/> Free zone or Free warehouse <input type="checkbox"/> Ship supplier <input type="checkbox"/> Direct to a ship <input type="checkbox"/>
	37. Details of Controlled Destinations (12-15) Approaches (where relevant) Address:	35. Reasons for Refusal 1. Absence/breaked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2. Non approved country <input type="checkbox"/> 3. Non approved establishment <input type="checkbox"/> 4. Prohibited product <input type="checkbox"/> 5. ED: Not-match with documents <input type="checkbox"/> 6. ED: Health mark error <input type="checkbox"/> 7. Physical hygiene failure <input type="checkbox"/> 8. Chemical contamination <input type="checkbox"/> 9. Micro biological contamination <input type="checkbox"/> 10. Other <input type="checkbox"/>
	36. Consignment Evidential Non seal use:	38. Official Veterinarian I, the undersigned official veterinarian, or designated official agent, certify that the veterinary checks on this consignment have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EU requirements. Signature: Name (in Capital): Date:
	41. List Transit ERP Formulation of exit from the EC and checks made of travelling goods confirm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a) of Directive 99/185/EU: Date: _____ Stamp: _____	42. Customs Document Reference: 43. Subsequent CVED Number(s):

aT Focus

2011. 1. 28 창간

발 행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 2011년 10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문 의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4 / info1@kati.net

본 자료는 KATI(www.kati.net) > 무역정보 > 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로스앤젤레스 aT센터, 로테르담aT센터에서 조사한 수산물수입제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1월에는 주요국 수산물수입제도에 대한 책자가 발간될 예정으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KATI 발간책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